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계한 전화 032-860-4340	보 도 자 료 2022. 6. 17.(금)

제목	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사범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금지정보(제11조 제2항 제3호)

☑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
- ☑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
※ **'22. 6. 16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**

❑ 인천지검은 ▲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게 강간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음독자살까지 시도하게 한 무고 사범, ▲사기 범행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사기·무고 사범을 인지하여 기소하는 등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추가수사를 통해 '21. 7. ~ '22. 5. 총 8명의 무고 사범을 인지·기소함

❑ 무고는 형사사법질서를 왜곡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로, 검사의 신속한 수사로 무고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억울한 누명을 쓴 국민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음

❑ 향후에도 인천지검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음

1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무고사범 엄단

○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의식으로 인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

○ 인천지검은 '21. 7. ~ '22. 5.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사경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직접 수사로 무고 범죄를 밝혀내어 <u>무고 사범 총 8명을 인지하여 기소함</u>

※ 상세 내용은 [별첨] 무고 인지 사례 참조

2 주요 수사 사례

□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

○ 피고인

- A○○ (45세, 무직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'21. 6.경 파출소에 이웃인 가○○으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 [무고]

○ 사건 경과

- '21. 6. 5. A○○, 강간 신고
- '21. 11. 10. 사경, 피무고자 가○○ 강간 등 사건 불구속 송치(기소의견)
- '22. 1. ~ 2. 가○○, A○○, 목격자 등 조사
- '22. 2. 25. A○○ 무고 인지
- '22. 2. 28. 가○○ 혐의없음 처분
- '22. 5. 25. A○○ 불구속 기소

○ 사경은 피무고자 가○○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<u>A○○의 진술을 근거로 가○○을 강간 등 혐의로 입건, 불구속 송치(기소의견)</u>함

○ 검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**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**한 후 목격자·A○○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, **A○○으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받음**

- **피무고자 가○○는** 사경의 소환 통보를 받고 음독하여 수 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**정신적으로 큰 피해**를 입었으나 무혐의처분 및 무고 인지를 통해 결백이 밝혀짐

○ 검찰의 철저한 직접수사를 통해 **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를 엄단**하고 **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국민을 보호**한 사례

□ 사기 범행 후 고소를 당하게 되자 사기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사례

○ **피고인**

- B○○ (64세, 무직)

○ **공소사실 요지**

- '21. 7.경 경찰서에 나○○이 본인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 제출 [무고]

○ **사건 경과**

- '21. 4. 30. 나○○, B○○을 사기죄로 고소
- '21. 7. 6. B○○, 나○○을 무고죄로 고소
- '21. 9.～10. 사경, 나○○의 무고죄 불송치 후 B○○ 이의신청하여 사건 송치
- '22. 1. 24. B○○ 사기 사건 불구속 송치(기소의견)
- '22. 1. ～ 3. 검찰 수사(관련자 조사, 해외법인 정보요청 등)
- '22. 3. 3. 나○○ 혐의없음 처분
- '22. 3. 28. B○○ 무고 인지
- '22. 4. 26. B○○ 무고 및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, 나○○ 혐의없음 처분

○ B○○이 우즈베키스탄에 시멘트 공장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나○○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고, **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나○○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며 오히려 나○○을 무고죄로 고소**한 사건

○ **사경은** B○○이 나○○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, 나○○이 B○○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**B○○이 나○○을 무고로 고소한 행위의 무고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수사하지 않음**

○ B○○이 나○○을 고소한 사건이 B○○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**검사는** 법무부를 통한 해외법인 정보 확인, 참고인·B○○ 조사 등 **철저한 추가 수사로 B○○이 실체 없는 해외 사업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나○○을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힘**

○ 사기 범행 이후 고소를 당하게 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고소한 **악질적인 무고 사범을 인지, 기소**한 사례

3 향후 계획

○ 무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국민을 신속히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시키고,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**검찰의 신속·적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**함

○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**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 대처**하여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▨

[별첨] 주요 무고인지 사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리 (기소일자)
1	A○○ (45세, 무직)	’21. 6. 이웃 주민으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	구공판 (’22. 5. 25.)
2	B○○ (64세, 무직)	’21. 7. 사기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	구공판 (’22. 4. 26.)
3	C○○ (32세, 일용직)	’21. 6. 전 여자친구를 괴롭힐 목적으로 체불임금 32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	구공판 (’21. 8. 6.)
4	D○○ (78세, 무직)	’21. 5.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	구약식 (’21. 9. 8.)
5	E○○ (25세, 자영업)	’21. 7.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	구약식 (’21. 11. 30.)
6	F○○ (66세, 무직)	’21. 10. 청소기, 선풍기 등을 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	구공판 (’22. 4. 26.)
7	G○○ (61세, 사업)	’21. 8. 상대방이 허락없이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	구공판 (’22. 5. 6.)
8	H○○ (38세, 무직)	’22. 2.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	구약식 (’22. 6. 3.)